

교통관리시스템운영및관리규정

제정 2002. 7.16 규정 제400호

개정 2006. 1. 9 규정 제538호

2016. 7.12 규정 제818호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시설관리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이 서울특별시로부터 위탁받은 교통관리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 및 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및 유지관리는 관계법령, 서울특별시 조례 및 규칙에서 규정한 사항을 제외 하고는 본 규정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용어의 정의) 이 규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교통관리시스템”이라 함은 교통수단 및 교통시설에 전자·제어 및 통신 등의 첨단기술을 활용하여 교통체계의 운영 및 관리를 과학화·자동화하고 교통정보를 수집, 처리, 보관, 가공 또는 제공함으로써 교통의 효율성과 안전성을 향상 시키는 시설을 말한다.
2. “도로전광표지”라 함은 도로상에 설치된 전자식 가변전광판으로 문자, 숫자 및 도형 등을 사용하여 운전자에게 교통정보를 수시로 제공하기 위하여 설치된 시설물을 말한다.
3. “유지관리”라 함은 시설물의 정상기능을 보존하고 이용자의 편의와 안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일상적으로 또는 정기적으로 시행하는 일련의 행위를 말한다.

제4조(관리범위) 공단이 관리하는 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 및 유지관리 범위는 위탁받은 시설에 한하며 세부적인 관리범위에 관하여는 별도의 계획 및 방침에 의한다.(’06.1.9)

제5조(근무제도) 교통정보처장은 교통관리시스템 운영 및 관리업무의 특성을 감안하여 취업규칙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직원의 근무방법, 휴무제도 등을 따로 정할 수 있다

제2장 운영업무

제6조(교통정보수집 및 제공) 시스템 운영자는 교통관리시스템이 설치된 도로의 차량검지기 등에 의해 수집된 각종 교통관련 정보의 수집 상태를 수시로 확인하며 도로전광표지, 인터넷, 방송 등 다양한 매체를 통하여 신속·정확히 정보가 제공 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야 하며, 변경된 정보에 대하여도 또한 같다.(개정 ’06.1.9, 2016.7.12.)

제7조(시스템 운영시간) 교통관리시스템의 운영시간은 24시간 운영함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기기 보호, 장비수명연장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또는 기기점검, 등 기타 특별한 사유가 있을 경우에는 운영시간을 단축할 수 있다.

제8조(교통정보 제공방법) ①도로전광표지는 도로정보, 일정구간의 교통소통상황, 교통사고 및 각종 공사 등으로 인한 지·정체구간, 주행속도, 소요시간, 기상정보 등 교통정보와 관련된 내용을 제공한다.

②관련도로 개설, 공사 예정 정보, 안전 계몽 표어, 기타 홍보사항 등을 표출할 수 있으며 교통정보문안과

함께 표출한다.

③운영자는 도로전광표지 및 인터넷의 정보표출 적정성 여부를 수시로 확인하고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개정 2016.7.12.)

제9조(상황근무) ①교통관리시스템 운영을 위해 상황근무자의 임무는 다음 각 호와 같다.

- 1.교통상황 감시 및 교통정보제공 (‘06.1.9)
 - 2.교통사고, 공사, 재해 등의 돌발상황 감지 및 유관기관 통보
 - 3.차량검지장치, CCTV 및 이용자제보 등을 통한 교통정보수집 및 제공
- ② 상황실 근무자는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다음 돌발상황 등에 대하여는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06.1.9)
1. 교통사고 및 고장차량으로 인하여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
 2. 기상악화로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을 경우
 3. 교통 지·정체가 상당한 시간 지속될 경우
 4. 교통소통에 지장이 있는 각종 공사 및 작업을 시행할 경우
 5. 기타 교통소통에 위협 또는 지장이 발생한 경우

제3장 유지관리업무

제10조(업무범위) 공단이 수행하는 시설물 유지관리 업무범위는 다음과 같다.

1. 도시고속도로 교통관리시스템 시설물 유지관리
2. 남산권교통정보시스템 시설물 유지관리
3. 기타 주요 간선도로 등 설치 시설 중 위탁받은 시설의 유지관리(본호신설 2016.7.12.)

제11조(사업계획의수립) 교통정보처장은 시설물의 정상기능 유지를 위하여 시스템 연간 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여야 한다.

제12조(점검업무) 시설물의 이상유무 점검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점검을 실시하여야 한다.

1. 일상점검 : 근무자의 운영상태 일일점검 및 현장 교통정보시스템 점검(‘06.1.9)
2. 정기점검 : 자체 계획에 의거 분기별 1회(년 4회) 시설물 종합점검
3. 특별점검 : 천재지변, 교통사고 및 민원 등 특별한 사항 발생시 점검

제13조(관계서류 비치) 시설물 운영 및 유지관리에 따른 관련서류를 작성 비치하여야 하며 문서관리 규정의 정하는 바에 따라 보관한다.

제14조(유지관리 시행방법) 시설물 정비 및 보수 등 효율적 유지관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업무일부를 용역계약에 의하여 시행 할 수 있으며 이 경우는 별도의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15조(일상유지관리) 시설물 기능유지 및 수명연장을 위한 예방조치 목적으로 일상 유지관리를 시행한다.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② (폐지규정) 교통정보시스템관리규정은 이를 폐지한다.

부 칙(2006. 1. 9)

① (시행일)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부 칙(2016. 7. 12)

이 규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